

채용서류 반환 안내

-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는 제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선발에 지원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까지의 기간 중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발송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 채용담당자 앞
우 34618

- ☐ 우리공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면접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까지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